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45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김영식·하영제·김용판

김선교・박대수・강대식

이주환 · 최승재 · 박성민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 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법률 제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분야"를 "분야(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③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2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u>분야</u> 의 전문	<u>분야(과학기</u>
가 12명 이내	술 분야를 포함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